토스뱅크 법인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요약)

이 설명서는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토스뱅크 법인 정기예금 특약」이 적용됩니다.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상품기본정보 (2024.03.22. 현재기준, 세금공제 전)

가입대상	법인		
계약기간	1개월 이상 3년 이하 (일 단위 지정 가능)		
가입금액	100만원이상		
기본금리	가입기간	기본금리	
	1개월(28일) 이상 3개월(89일)미만	연 0.45%	
	3개월(89일) 이상 6개월(180일) 미만	연 0.50%	
	6개월(180일)이상12개월(365일)미만	연 0.60%	
	12개월(365일)이상 24개월(730일)미만	연 0.75%	
	24개월(730일)이상 36개월(1095일)미만	연 0.80%	
	36개월(1095일)	연 0.90%	
	※ 가입일(재예치의 경우 재예치일을 의미하며, 이하 동일) 당시 모바일앱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금리를 적용 ※ 은행은 거래처에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계약서를 통해 확인 가능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만기일 또는 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계약의 해지	비대면 채널 해지		
일부해지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예금 금액 중 일부를 최대 2회까지 출금 가능		
재예치	가능		

2. 상품 유의사항

이자계산방법	가입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로 계산하여 지급 (원 미만은 절사)
중도해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
만기 후 해지	만기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만기일 당시 만기 후 금리를 적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 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토스뱅크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661-765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tossbank.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금융상품_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토스뱅크 법인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전체)

이 설명서는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토스뱅크 법인 정기예금 특약」이 적용됩니다.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상품개요

•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금리 예금 상품

2. 상품기본정보 (2024.03.22. 현재기준, 세금공제 전)

가입대상	법인	
계약기간	1개월 이상 3년 이하 (일 단위 지정 가능)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최고가입금액 제한 없음)	
기본금리	가입기간	기본금리
	1개월(28일) 이상 3개월(89일)미만	연 0.45%
	3개월(89일) 이상 6개월(180일) 미만	연 0.50%
	6개월(180일)이상12개월(365일)미만	연 0.60%
	12개월(365일)이상 24개월(730일)미만	연 0.75%
	24개월(730일)이상 36개월(1095일)미만	연 0.80%
	36개월(1095일)	연 0.90%
	※ 가입일(재예치의 경우 재예치일을 의미하며, 이하 동일) 당시 모바일앱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금리를 적용 ※ 은행은 거래처에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계약서를 통해 확인 가능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만기일 또는 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계약의 해지	비대면 채널 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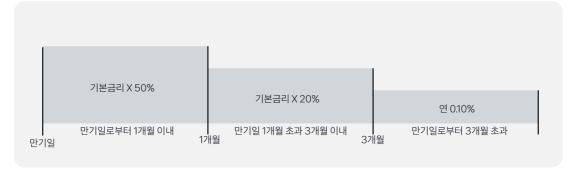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예금 금액 중 일부를 최대 2회까지 출금 가능		
일부해지	• 단, 일부해지 후 최소 유지금액은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일부해지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		
재예치	 만기일 전일까지 재예치를 신청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재예치 금액은 원금 또는 (세후)원리금 중에서 선택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만기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입 기간별 기본금리를 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예치 불가 이 예금에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 		
	원금 재예치를 신청한 계좌 중 이자 입금 계좌에 입금제한이 있는 경우이 예금의 판매가 중단된 경우		
이자계산방법	가입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 (원 미만은 절사)		
	가입일(또는 재예치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로 계산 신규금액 X 약정금리 X 약정일수 / 365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 약정금리는 가입 시점에 확약된 금리	마기일 만기일 리를 말하며, 가입 후 은행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를 통해 확인 가능	
	가입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가입	일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 (원 미만은 절사)	
	예치기간	적용금리	
	1개월(28일) 이하	연 0.10%	
	1개월(28일) 초과 3개월(89일) 미만	연 0.30%	
	3개월(89일) 초과 6개월(180일) 미만	가입시점 기본금리X 5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 (최저 연 0.30%)	
	3개월(89일) 초과 6개월(180일) 미만 6개월(180일) 초과 9개월(270일) 미만	가입시점 기본금리X 5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 (최저 연 0.30%) 가입시점 기본금리 X 7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 (최저 연 0.40%)	
중도해지 금리		, , , , , , , , , , , , , , , , , , , ,	
중도해지 금리	6개월(180일) 초과 9개월(270일) 미만	가입시점 기본금리 X 7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 (최저 연 0.40%) 가입시점 기본금리 X 8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 (최저 연 0.50%)	
중도해지 금리	6개월(180일) 초과 9개월(270일) 미만 9개월(270일) 초과 11개월(330일) 미만	가입시점 기본금리 X 7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 (최저 연 0.40%)	
중도해지 금리	6개월(180일) 초과 9개월(270일) 미만 9개월(270일) 초과 11개월(330일) 미만 11개월(330일) 초과 ※예치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	가입시점 기본금리 X 7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 (최저 연 0.40%) 가입시점 기본금리 X 8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 (최저 연 0.50%)	

만기후금리

만기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만기일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간별 만기 후 금리를 적용 (원 미만은 절 사)

만기 후 경과기간	적용금리
만기 후 1개월 이내	만기시점기본금리 X 50%
만기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만기시점 기본금리 X 20%
만기후 3개월 초과	연 0.10%

※만기 후 경과기간: 만기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



세제혜택	해당사항 없음
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	압류, 지급정지 등 지급제한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지(일부해지 포함)가 불가하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연계·제휴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휴면예금 및 출연	만기일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 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함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였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 (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 통제 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토스뱅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서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도 및 법인의 해산·합병·파산 또는 영업·자산의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토스뱅크 디파짓쿼드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661-765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tossbank.com)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13층 | 고객센터 1661-7654 | 사업자번호 462-86-01671

